

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7782
결재일자	2015.4.2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82호

주무관	문화관광팀장	문화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이하용	정형래	이현식	소판수	04/21 이비오
협조	기획예산과장 이윤영 법률전문관 원종배 법제팀장 이상수			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계획

2015. 4.



성 동 구

(문화체육과)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계획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성동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성동구 문화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| **관련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)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(위탁운영 등), 제7조(운영위원회 등)

II | **개정사유**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성동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동구 문화예술시설(성동문화회관, 성수문화복지회관)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

Ⅲ

개정내용

□ 제5조(위탁운영 등)제1항

-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.

▶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→ 조례 제6조제2항제4호로 변경

□ 제7조(운영위원회 등)제5항제1호

-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수탁자 선정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. 다만,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▶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→ 조례 제6조제2항제4호로 변경

※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「수탁대상자」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2.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
3. 공공시설 운영분야에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4.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

IV

추진일정

- 규제심사, 법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4.22.
- 시행규칙 입법예고 4.23. ~ 5.13.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5.15.

- 붙임 1.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2. 타 자치구 현황 1부. 끝.